

수원대학교 양성평등센터 규정

- 제정 2005.04.01.
- 개정 2011.04.01.
- 개정 2015.07.1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2015.7.1.시행)과 수원대학교 학칙 제6조 1호에 따라 수원대학교 양성평등센터의 조직과 운영, 수원대학교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수원대학교의 소속 교직원(총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과 학칙의 적용을 받는 학생 및 학교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제3자 등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관련된 성희롱·성폭력으로 한다.

제 3 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2호(2015.7.1.시행)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하고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수원대학교 교직원, 학생, 학교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제 3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성폭력”이란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행위를 말한다.

③ “피해자”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④ “가해자”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가한 사람을 말한다.

⑤ “신고인”이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상담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⑥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⑦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제 4 조 (기관장의 책무) 수원대학교 총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성폭력상담센터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해야 한다.

제 5 조 (규정의 변경) 본 센터는 규정의 변경 및 해산결의는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2 장 담당기관

제1절 성희롱·성폭력상담센터

제 6 조 (설치) 부속기관으로 양성평등상담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 7 조 (구성) 센터에는 센터장, 고충상담원, 고충심의위원회를 둔다.

제 8 조 (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성폭력행위의 상담과 조사, 심리적·법적 구제
2. 성희롱·성폭력행위의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 제정
3. 상호존중의 평등한 성문화를 지향하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4.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실태 조사와 연구 및 관계부서에 대한 의견표명
5.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9 조 (센터장) 센터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 10 조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원(이하 “상담원” 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조언
2.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보고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사건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업무
6. 기타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
7.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 기록 및 보존
8. 그 밖에 센터의 규정 변경 및 예산과 결산 등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

제 11 조 (고충심의위원회)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센터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중재, 심의
2. 피해자 보호 요구 및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3.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4. 그 밖에 센터의 규정 변경 및 예산과 결산 등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제 12 조 (자문위원회)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2절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

제 13 조 (성희롱·성폭력 고충의 신청)

-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센터에 고충을 신청 또는 신고를 할 수 있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 ②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③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센터에 이관해야 한다.
- ④ 센터는 한 번 조사해서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제 14 조 (신고의 각하)

-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신고인이 제13조 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13조 2항 또는 4항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 ②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5 조 (임시조치) 센터장은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2.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16 조 (상담 및 조사)

- ① 센터의 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고충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고, 센터장에게 접수된 사건을 보고해야 한다.
- ② 센터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 ③ 조사가 개시되면 상담원은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④ 상담원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상담원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⑥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제 1, 2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어도 센터에서는 계속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의해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⑧ 상담원은 신고된 성희롱·성폭력사건을 상담·조사하여 이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⑨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면 센터장은 사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한다.

제 17 조 (조사의 방법)

-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출 청취,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② 제1항 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일주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8 조 (당사자의 권리)

- ① 당사자는 센터장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 ②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19 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② 센터장, 상담원, 위원회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③ 센터장, 상담원, 위원회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0조 (불이익 금지)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센터장과 고충상담원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피해자 보호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으로부터 상담원이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제 21 조 (심의, 의결)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사건의 사실 관계 및 해결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④ 상담원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이전에 사건당사자간의 합의를 중재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제 22 조 (신고의 기각)

① 센터장은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23 조 (당사자간 해결)

① 양 당사자는 피해 회복 방안을 서로 협의하여 센터에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이 제1항의 청구를 확인한 때에는 제25조 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 24 조 (조정절차)

- ① 센터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③ 센터장 또는 위원회는 양 당사자에게 적절한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제25조 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④ 조정절차는 당사자가 조사결과를 통보 받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 ⑤ 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5 조 (구제조치 등)

- ① 센터장은 조사 결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사건이 있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센터장은 조사 결과,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 26 조 (신고의 철회) 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제 27 조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조치)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사유와 징계의 정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사 결과 당사자에게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가 제15조 또는 제25조1항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다르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4.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누구라도 센터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가해자의 공개 사과
 2.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3.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금지
 4. 가해자의 사회봉사
- ③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 ④ 성희롱·성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 ⑤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28 조 (경비) 상담센터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29 조 (관계부서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부서는 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30 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 ① 이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 ③ 이 규정은 2015년 7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수원대학교 양성평등센터 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 제정 2005.04.01.
- 개정 2011.04.01.
- 개정 2015.07.10.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수원대학교 양성평등센터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0조에 의거하여 수원대학교 구성원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대책과 피해자 보호 및 그 처리 절차를 포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시행세칙은 수원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 가운데 본교에 재직·재학(휴직·휴학 포함)중인 교원, 직원, 학생 등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적용된다.
- ② 규정 제2조에서 “학교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제3자”라 함은 연구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및 교내 입주기관에 근무하는 자 등으로서 그 인정 여부는 필요시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조(센터장의 자격)

- ① 양성평등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은 교수 중에서 관련 분야 전공자 가운데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센터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임시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 ④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⑤ 센터장은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장에게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

제4조(상담원의 자격 및 구성)

- ① 센터의 고충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교수 2명(남녀 각 1명씩)과 일반상담원 1명을 총장이 임명한다.
- ② 필요시 상담원 수를 가감할 수 있다.
- ③ 교수인 상담원의 임기는 2년, 일반상담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④ 교수인 상담원은 2년에 1번, 일반상담원은 1년에 1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주최하는

고충상담원 전문가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⑤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상담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임시상담원은 센터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⑥ 상담원은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센터장에게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

제5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① 양성평등기본법(2015.7.1.시행)에 따라 매년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직원 대상으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학생대상으로는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③ 센터장은 연말 또는 다음 연도 초까지 다음 연도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기타 사업의 실시 시기·내용·방법·예산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예방교육은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강의(대면강의)로 실시하나, 사정에 따라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사건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사건예방에 관한 사항

⑤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센터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수,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심의위원회의 위원)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② 사건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을 달리한다.

1. 교직원 간 사건일 경우: 부총장(위원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해당부처장 혹은 학과장, 센터장(이상 6인)

2. 교직원과 학생 간 사건일 경우: 부총장(위원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학생생활연구센터장, 해당부처장 혹은 학과장, 센터장(이상 7인)

3. 학생 간 사건일 경우: 부총장(위원장), 기획실장, 학생지원처장, 여학생감, 학생생활연구센터장, 해당부처장 혹은 학과장, 센터장(이상 7인)

③ 사안에 따라 필요시 추천직 위원이 포함될 수 있다. 추천직 위원은 부총장의 추천으로 직원 혹은 외부전문가 남녀 각 1명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회의)

-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외의 사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교직원 또는 학생이 관련된 성희롱·성폭력사건 처리사안이란 성희롱·성폭력사건에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일방이 교직원 또는 학생인 사안을 말한다.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심의위원 등의 제척) 위원, 센터장, 상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 조사업무에서 제척된다.

- ① 위원 등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 ②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③ 위원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제9조(심의위원 등의 기피)

-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8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이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위원 등의 회피) 위원 등은 제8조 또는 제9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위원 등의 교체)

-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 결원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이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 및 조치)

- ① 위원회는 징계요구 또는 발의와 필요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으며, 복수의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피해자 및 가해자의 사전동의를 조건으로 가해자의 공개사과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공개사과는 학교지정 게시판에 대자보를 부착하거나 센터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실명으로 한다.
- ④ 위원회는 가해자에게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⑤ 가해자 교육은 센터가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교외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조치로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가해자에게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사회봉사는 지정기관에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⑧ 위원회는 조치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⑨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방조 또는 동조한 자 또는 사건처리과정에서의 2차 가해자에게도 징계 및 조치를 내릴 수 있다.
- ⑩ 위원회는 가해자가 재심의 요청없이 징계 및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재발위험이 있거나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해자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해자의 신원을 포함한 사건공개를 할 수 있다.
- ⑪ 위원회는 규정 제19조 피해자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희롱·성폭력사건의 처리 결과를 피해자의 동의하에 1주 이상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재심의)

- ① 사건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사건당사자의 재심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0일 이내에 재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재심의 신청과 재심의 과정은 사건당사자 각 1회에 한한다.

제14조(기록 및 자료보존)

- ① 센터는 성희롱·성폭력사건 관련자와의 면담 및 조사내용을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성희롱·성폭력사건의 진위여부조사, 처리과정 등의 전 과정의 기록을 보존한다.

제 1 조 (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③ 이 규정은 2015년 7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